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50 발의연월일: 2020. 10. 8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안호영 • 윤미향

신정훈 · 노웅래 · 최종윤

장경태 · 어기구 · 이용빈

송옥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진관의 사진처리시설, 안경원의 렌즈제작시설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 사업장의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·운영 사업장과 달리 환경기술인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폐업 시 기타수질오염원 의 폐업신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신고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.

이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	제60조(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
고 등) ① (생 략)	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
	신고를 한 자가 「부가가치세
	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
	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
	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
	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
	폐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
	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
	<u>수 있다.</u>
<u>②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⑧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